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23

발의연월일: 2024. 8. 2.

발 의 자:천준호·강준현·황명선

김 윤•이기헌•이해식

조승래 · 김영배 · 한민수

안규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의적으로 정한 대금 정산 주기가 지목 되고 있음.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체의 직매입 거래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지만 중개판매의 정산주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런 이유로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정산주기는 짧게는 2,3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제각각임.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티몬-위메프는 정산주기를 최대 70 일까지 늦춰 소비자가 지불한 대금을 사주의 이익을 위해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긴 정산주기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입점 판매자의 자금을 무이자로 활용하는 불공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금을 전용할 우려가 커 티몬- 위메프 사태에서처럼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함.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를 구매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또는 배송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로 하고, 정산이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하도록 하여 정산주기를 이용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법률 제 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 개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구매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또는 배송완 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⑤ 통신판매중개자가 제4항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한 적용 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상품이 판매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 ③ (생 략)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
	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구매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또는 배송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u><신 설></u>	⑤ 통신판매중개자가 제4항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기간
	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
	자를 지급하여야 한다.